

2019년도 서울대학교병원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일지

상담일시	문의사항	상담결과
2019.2.27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의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적용되나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들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으로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2019.3.25	청탁금지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강의를 요청한 경우 신고의무 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국립학교'도 국가나 지자체로 들어가나요?	<p>공직자들은 외부강의를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를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p> <p>(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등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p> <p>① 헌법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5개)</p> <p>②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42개, 개별법에 따른 행정기관 10개(국가인권위원회 포함)</p> <p>※ 국립 유치원, 국립 초·중·고등학교, 국립대학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중 교육부 산하 기관으로 이에 해당</p> <p>(2)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p> <p>① 지방자치단체 : 17개 광역자치단체(1특별시, 6광역시, 1특별자치시, 8도, 1특별자치도), 226개 기초자치단체(75시, 82군, 69자치구)</p>

		<p>② 교육청 : 17개 시·도교육청</p> <p>※ 공립 유치원, 공립 초·중·고등학교, 공립대학교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으로 이에 해당</p> <p>그 외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사립학교, 언론사 등의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2019.4.16.	강의 장소 등은 동일한데 강의 주제가 달라질 경우 별개의 강의로 볼 수 있을까요?	외부강의의 경우 강의 주제가 달라지는 경우, 개별적으로 사례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2019.5.3	교수님께서 서면 자문 요청을 받으셨고, 사례금을 수령하신다면, 이러한 경우 강의로 신고 해야 될까요?	<p>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서면자문, 원고 작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닌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p> <p>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p> <p>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p>

		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9.6.13	동호회 내에서 동호회 차원에서 선 물이나 경조사금을 받을 수 있나요?	<p>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으며(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 그 이하의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p> <p>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p> <p>이 때 단체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2019.7.23.	교수님이 의대겸직교수님이신데 외부에서 학회 발표가 있으실 예정입니다. 혹시 1시간 상한액으로 얼마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인 경우 필요한 경우 기관별로 상한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직급별 구분 없이 시

	<p>나 받을 수 있으며, 총 사례금은 어느정도 받으실 수 있으실까요?</p>	<p>간당 40만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p> <p>다만,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직원인 경우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약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 교직원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시간당 100만원의 상한액을 적용합니다.</p> <p>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사례금 총액은 알고 계시다시피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시간에 관계 없이 60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나, 학교 교직원은 사례금 총액에 제한이 없습니다.</p>
<p>2019.7.23.</p>	<p>산부인과 교수님께서 정년퇴임을 하실 예정이십니다. 이에 따라 자그마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가능 할까요?</p>	<p>퇴직한 공직자등이 다시 공직자등이나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아닙니다.</p> <p>만일 퇴직한 교수님이 재취업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자들과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금품 등 제공이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음식물과 선물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상호 합의 하에 각출하는 경우에도 가액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p>
<p>2019.7.25.</p>	<p>같은 팀 동료가 결혼을 하는데 경조사비에도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p>	<p>직무관련성이 없는 동료 직원, 지인 등의 경우 법 제8조제1항(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축하금 등 제공이 가능함을</p>

	립니다.	안내드립니다.
2019.8.19.	과에서 주최하는 내부 강의가 있는데 이것도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은 공직자등이 외부기관으로부터 받는 고액의 사례금이 보험성 뇌물로 악용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이를 규제 하려는데 제도적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임직원이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으로부터 요 청받아 내부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019.8.21.	해외 제약회사에서 주최하는 학회에 참석하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까요? 그렇다면 학회 강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2가지 주제의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p>1. 해당 심포지엄의 주최가 해외 학술단체라면, 사례금 상한액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 기준에 따를 것이나 (참조1) 말씀해주신 내용대로 해외 제약회사 주최의 심포지엄이라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1)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제 25조 관련)</p> <p>2.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 겸직교수 및 기금교수 : 100만원/1시간 - 그 외 병원 임직원 : 40만원/1시간 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교수님께서서는 1시간당 최대 40만원의 사례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p>3. 권익위에서 제공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르면 외부강의 등의 1회 기준은 강의 등 일자가 같더라도 대상이나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르면 사례금 지급대상에 해당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p> <p>따라서 교수님께서는 같은 일자이지만 다른 주제의 두가지 강의(각 1시간 이내)를 진행하실 예정이시므로, 총 80만원(최대)의 사례금 수령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p> <p>4. 만약 사례금을 초과하여 수령하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고 지체 없이 초과 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해주셔야 합니다.</p>
2019.8.21.	<p>외부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사례금 상한액을 알고 싶습니다. 오전, 오후 강의이고 각각 1시간~2시간 강의 예정입니다.</p>	<p>오전/ 오후 강의의 대상이 다르고 각각 강의시간이 1시간을 초과한다면 사례금 상한액은 60만원 + 60만원 = 120만원이 맞습니다.</p> <p>관련 : 1.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p> <p>2. 겸직교수 및 기금교수를 제외한 병원 임직원의 외부강의 상한액(1시간)은 40만원임.</p> <p>3.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p>

		<p>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5조 관련)</p>
<p>2019.9.3.</p>	<p>회의 관련하여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비회사와 저녁이 잡혀있는데 저녁을 같이 먹어도 될까요?</p>	<p>1. 만약 현재 장비회사의 재계약 시기가 다가오거나 혹은 교수님께서 장비회사를 평가하실 수 있는 시기라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외없이 식사 대접을 받는것이 불가능 함을 알려드립니다.</p> <p>2. 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 단순 업무상의 협조에 의한 회의라면 아래와 같이 해석될 수 있습니다.</p> <p>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3장 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1호에서는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나. 다만 제8조 3항 2호에 의거하여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품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p> <p>다. 이 중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이란,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3만원 이하의 금액이라면 해외 회의 일정 중 저녁식사는 원활한 직무수행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보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p> <p>※ 이 경우 음식물 가액은 1회를 기준으로 하고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는 경우 1회로 평가됩니다.</p> <p>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업체 선정이 내년 2~3월 경이고 이번 출장이 특정 업체의 공장 견학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p>

		<p>식사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번의 경우 식사 비용을 각자 부담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p>
2019.9.25.	<p>교수님께서 모바일 프로그램에 출연하실 예정이신데 출연료 관련해서 상한액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p> <p>단순 건강 프로그램이고 스트레칭, 건강요법 등을 소개하실 예정입니다.</p>	<p>1. 프로그램의 성격이 토론이나 회의 등 다수를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 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p> <p>2. 위와 관련하여 출연료는 너무 과도한 금액이 아니라면(특혜 등을 받아 보통 정해져 있는 출연료를 초과하여 받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3항 3조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p>
2019.10.24.	<p>민간업체에서 주최하는 설명회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저녁식사가 있습니다. 참여해도 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p>	<p>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의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만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아닌 제3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 제8조 제3항 제6호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p> <p>-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공문/메일 등 공식적인 초청 유무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p>

		<p>-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p> <p>-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p> <p><음식물></p> <p>-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은 수수가 허용됨</p> <p>- 통상적 범위의 가액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기준 3만원 초과 가능</p> <p>나.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이어야 하므로 위 모임이 참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거나,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p> <p>교수님께서 참석하시는 설명회가 상기 조건들에 위배되는 요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청탁금지법 예외사유(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일률적인 음식물 수수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p>
--	--	---